

섬진강 하천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020. 11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1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섬진강 국가하천 구간은 기 수립된 2009년 하천기본계획 이후 유관기관과 지자체에서 실시한 각종 하천개수사업 및 하천시설물 설치 등 하천 제반 여건의 변화와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하도 및 수문·수리특성변화와 하천의 관리운영의 미비점 보완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하천사용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1.2 추진경위

- 2015. 07. 30 :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업착수
- 2017. 01. 02 :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일부 변경 고시(하천공간 지구지정)
- 2018. 12.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2019. 01 ~ 2019. 02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서면심의)
- 2019. 03. 05 ~ 2019. 03. 18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19. 07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 2019. 07. 03 ~ 2019. 07. 30 :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
- 2019. 07. 11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순창군 유등면사무소, 구례군 구례읍사무소)
- 2019. 07. 12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하동군 하동읍사무소)
- 2020. 03. 06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
- 2020. 04. 13 :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요청(영산강유역환경청)
- 2020. 07. 22 :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제출
- 2020. 07. 30 :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영산강유역환경청)
- 2020. 09. 21 :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제출
- 2020. 09. 23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6714)

1.3 계획의 내용

가. 계획 명: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나. 위 치: 전북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지장천 합류점~경남 하동군 금남면 갈도 삼각점으로부터 서로
그은 직선

다. 연 장: 173.3km

라. 계획 수립기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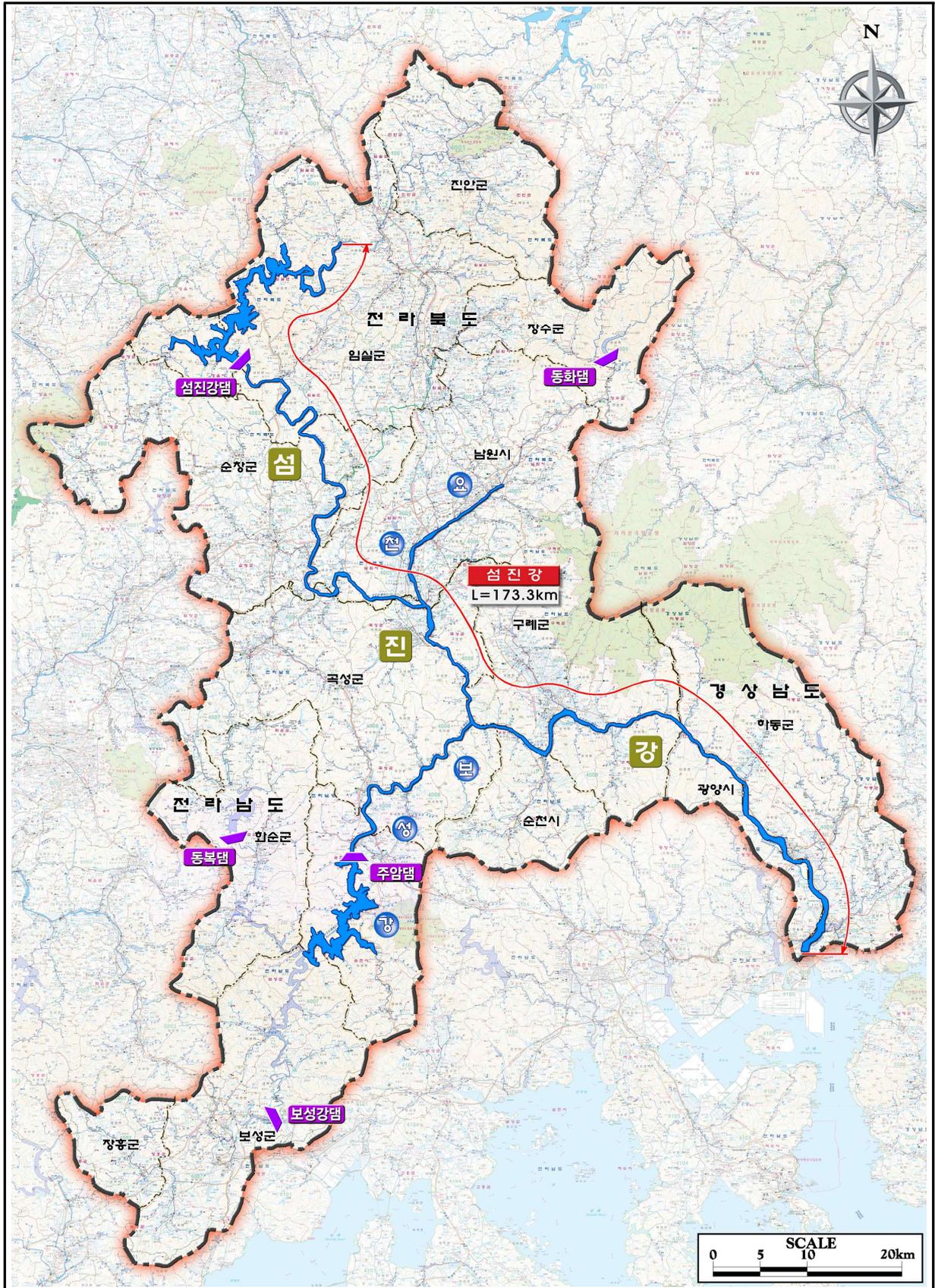
마. 계획의 내용

<표 1-1> 계획의 범위

하천명	하천 등급	구 간		하천연장 (km)	비 고
		시 점	종 점		
섬진강	국가	전북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지장천 합류점	경남 하동군 금남면 갈도 삼각점(52.2m)으로부터 서로 그은 직선(전남 광양시 태인동)	173.3	

<표 1-2>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

하천명	하천 등급	기본계획 수립일	하천연장				비 고
			계(km)	수립구간		미수립 구간 (km)	
				고시일	연장(km)		
섬진강	국가	1978.12	110.00	1979.03.05	110.00	-	건설부 고시 제70호 (관보 제8191호)
		1989	136.10	1990.07.05	136.10	-	건설부 고시 제396호 (관보 제11567호)
		2003.10	173.30	2003.12.11	173.30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3-339호 (관보 15569호)
		2009.11	173.30	2009.11.26	173.30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27호 (관보 제17140호)



<위치도>

제2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2.1 의견수렴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 함

2.2 의견수렴 내용 및 결과

가. 공고 및 공람

구 분	내 용		비 고
주관기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람	공람장소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해당 지자체 •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남원시 대강면, 임실군 운암면, 순창군 유등면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순천시 황전면, 광양시 다압면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공고 제2019-148호
	공람기간	- 2019년 07월 03일 ~ 2019년 07월 30일	
정보통신망 게시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내일신문, 광주일보, 전북도민일보, 경남일보		

나. 의견수렴 결과

구 분	의 건 제 출 여부	비 고	
관 계 행정 기관 및 전문가	영산강유역환경청	○	
	전북지방환경청	○	
	관 련 지 자 체	○	
	관 련 전 문 가	○	
주 민 의 건	○		

□ 공고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9-148호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공고하오니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계획의 개요

- 계획명 :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위치 : 섬진강(연장 173.3km)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 공개기간 및 장소

구 분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2019.07.03~2019.07.30 (20일 이상,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공람장소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해당 지자체 읍면사무소 (정읍시 산내면, 남원시 대강면, 임실군 운암면, 순창군 유등면, 순천시 황전면, 광양시 다압면, 곡성군 곡성읍, 구례군 구례읍, 하동군 하동읍)
정보통신망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http://www.molit.go.kr/irocm)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주민설명회 개최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1차 (상류권)	2019.07.11(목) 10:00~11:00	순창군 유등면사무소 복지회관	
2차 (중류권)	2019.07.11(목) 15:00~16:00	구례군 구례읍사무소 다목적실	
3차 (하류권)	2019.07.12(금) 14:00~15:00	하동군 하동읍사무소 회의실	

4. 의견제출

- 대상 및 제출내용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으로서 계획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영향에 대한 의견 및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
- 제출처 : 공람장소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른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 제출기한 :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63-850-9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제목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분야	공고		
담당부서	하천계획과	작성자	안영선
전화번호	063-850-9327		
등록일	2019-07-01	조회	23
첨부파일 1	바로보기		
첨부파일 2	바로보기		
첨부파일 3	바로보기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계획의 개요
 - 계획명 :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위치 : 섬진강(연장 173.3km)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공개기간 및 장소
 - 공개기간 : 2019. 7. 3. ~ 2019. 7. 30.
 - 공개장소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해당 지자체 읍면사무소
 - 공개내용 :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등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63-850-9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섬진강하천기본계획 전략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안)
 2. 섬진강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서
 3. 주민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평가서 초안 공람 -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명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사업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형 	소계지	면적	폭	연장
	시점 :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석동솔치로 369) 지장천 합류점 종점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나팔뚝길 60) 갈도 삼각점으로 부터 서로그은 직선				
협의대상 (협의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계획 [하천법]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사업구분	하천이용 / 하천기본계획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승인기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사업규모 : 173.3km 사업비 : 000.00 백만원 				

초안공람 주민의견수렴

■ 협의업무 담당

협의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자	김나은
담당부서		E-mail	naeun1021@korea.kr
전화번호	02--	Fax번호	02--

□ 내일신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9-148호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섬진강 하천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공고하오니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계획의 개요

- 계획 명 :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위 치 : 섬진강(연장 173.3km)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 공개기간 및 장소

구 분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2019.07.03~2019.07.30 (20일 이상,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공람장소	- 해당 지자체 읍면사무소 (정읍시 산내면, 남원시 대강면, 임실군 운암면, 순창군 유등면, 순천시 황전면, 광양시 다압면, 곡성군 곡성읍, 구례군 구례읍, 하동군 하동읍)
정보통신망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http://www.molit.go.kr/irocm)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주민설명회 개최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1차 (상류권)	2019.07.11(목) 10:00~11:00	순창군 유등면사무소 복지회관	
2차 (중류권)	2019.07.11(목) 15:00~16:00	구례군 구례읍사무소 다목적실	
3차 (하류권)	2019.07.12(금) 14:00~15:00	하동군 하동읍사무소 회의실	

4. 의견제출

- 대상 및 제출내용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으로서 계획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영향에 대한 의견 및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
- 제출처 : 공람장소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른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 제출기한 :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63-850-9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일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9-148호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섬진강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계획의 개요

- 계획 명 :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위 치 : 섬진강(연장 173.3km)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 공개기간 및 장소

구 분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2019.07.03~2019.07.30 (20일 이상,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공람장소	- 해당 지자체 읍면사무소 (정읍시 산내면, 남원시 대강면, 임실군 운암면, 순창군 유등면, 순천시 황전면, 광양시 다압면, 곡성군 곡성읍, 구례군 구례읍, 하동군 하동읍)
정보통신망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http://www.molit.go.kr/irocm)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주민설명회 개최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1차 (상류권)	2019.07.11(목) 10:00~11:00	순창군 유등면사무소 복지회관	
2차 (중류권)	2019.07.11(목) 15:00~16:00	구례군 구례읍사무소 다목적실	
3차 (하류권)	2019.07.12(금) 14:00~15:00	하동군 하동읍사무소 회의실	

4. 의견제출

- 대상 및 제출내용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으로서 계획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영향에 대한 의견 및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
- 제출처 : 공람장소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른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 제출기한 :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63-850-9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북도민일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9-146호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섬진강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공고하오니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계획의 개요
 ○ 계획 명 :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위 치 : 섬진강(연장 173.3km)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 공개기간 및 장소

구 분	공개기간 및 장소
공개기간	2019.07.03~2019.07.30 (20일 이상,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공람장소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해당 지자체 읍면사무소 (정읍시 산내면, 남원시 대강면, 인실군 운암면, 순창군 유등면, 순천시 황전면, 광양시 다압면, 곡성군 곡성읍, 구례군 구례읍, 하동군 하동읍)
정보통신망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http://www.molit.go.kr/room)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www.eiass.go.kr)

3. 주민설명회 개최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1차 (상류권)	2019.07.11(목) 10:00~11:00	순창군 유등면사무소 복지회관	
2차 (중류권)	2019.07.11(목) 15:00~16:00	구례군 구례읍사무소 다목적실	
3차 (하류권)	2019.07.12(금) 14:00~15:00	하동군 하동읍사무소 회의실	

4. 의견제출
 ○ 대상 및 제출내용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으로서 계획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영향에 대한 의견 및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
 ○ 제출처 : 공람장소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http://www.eiass.go.kr/>)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른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 제출기한 :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63-850-9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남일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9-146호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섬진강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공고하오니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계획의 개요
 ○ 계획 명 :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위 치 : 섬진강(연장 173.3km)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 공개기간 및 장소

구 분	공개기간 및 장소
공개기간	2019.07.03~2019.07.30 (20일 이상,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공람장소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해당 지자체 읍면사무소 (정읍시 산내면, 남원시 대강면, 인실군 운암면, 순창군 유등면, 순천시 황전면, 광양시 다압면, 곡성군 곡성읍, 구례군 구례읍, 하동군 하동읍)
정보통신망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http://www.molit.go.kr/room)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www.eiass.go.kr)

3. 주민설명회 개최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1차 (상류권)	2019.07.11(목) 10:00~11:00	순창군 유등면사무소 복지회관	
2차 (중류권)	2019.07.11(목) 15:00~16:00	구례군 구례읍사무소 다목적실	
3차 (하류권)	2019.07.12(금) 14:00~15:00	하동군 하동읍사무소 회의실	

4. 의견제출
 ○ 대상 및 제출내용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으로서 계획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영향에 대한 의견 및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
 ○ 제출처 : 공람장소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 (<http://www.eiass.go.kr/>)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른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 (<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 제출기한 :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63-850-9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순창군 유등면사무소 복지회관</p>	
<p>구례군 구례읍사무소 다목적실</p>	
<p>하동군 하동읍사무소 회의실</p>	

<주민설명회 개최 현황>

2.3 의견수렴 반영여부

가. 관계 행정기관

1.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p>II. 협의내용</p> <p>1. 총괄</p> <p>◦본 건은 섬진강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으로, 섬진강은 하천 고유의 지형인 하중도(모래톱) 및 하중도 내 수목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하천이므로, 자연상태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p>-섬진강의 굴곡성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과거 재해(홍수) 이력 등을 검토하여 재해 관점에서 필요 최소한 구간에 한하여 하도정비 및 제방계획(축제 및 보축) 등 수립</p>	<p>◦반영</p> <p>-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재해 관점에서 필요한 최소한 구간에 하도정비 및 제방계획(축제 및 보축) 등을 수립하였음</p> <p>-재해위험에 따른 하도정비지구 8개소, 유지관리지구 12개소를 선정</p>	
<p>-섬진강의 하중도(모래톱) 및 하중도 내 수목 제거는 축소하고 타 홍수방어 대안 검토</p> <p>-하도습지(36개소)는 하도정비 및 유지관리 구역에서 제외하고 원형보전 방안 제시</p>	<p>◦반영</p> <p>-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지 하도정비 및 유지관리 구역이 필요한 지역을 최소화하여 검토하였음</p>	
<p>-하천 현황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친수지구로 계획한 구간(606~613쪽, ㉔~㉕)은 친수구역 설정으로 인하여 향후 섬진강의 우수한 환경 등에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친수구역 지정 전면 재검토</p>	<p>◦반영</p> <p>-섬진강 친수지구 변경 지역은 기존 조성된 지역 및 지자체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보전지역을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지 추가 지정하여 전체적인 보전지역의 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p>	
<p>◦획일화된 이·치수계획 적용, 관리의 효율성과 수리·수문 측면만을 강조한 정비계획은 향후 하천의 기능 및 자연성 유지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하천별 환경현황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p>◦반영</p> <p>-하천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p>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p>◦본 계획은 섬진강의 아·치수 및 환경계획의 근간을 수립하는 것이므로 향후 실시계획이 본 기본계획에서 설정된 하천정비 방향으로 시행되도록 사업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p>	<p>◦반영 -향후 실시계획시 본 기본계획에서 설정된 하천정비 방향이 시행되도록 사업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하였음.</p>	
<p>◦본 계획과 국가차원 환경 분야 종합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자연자원 보전과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등 상위·연관 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성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 환경보전 시책과의 부합여부를 검토·비교 제시하여야 함</p>	<p>◦반영 -금회 섬진강 하천기본계획과 상위·연관 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성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 환경보전 시책과의 부합여부를 검토하였음</p>	
<p>◦각종 보호구역, 보호 야생생물의 서식공간, 자연성이 우수한 지역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등의 존재여부를 위치도와 표 등으로 구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보전계획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p>	<p>◦반영 -금회 본안시 각종 보호구역, 보호 야생생물의 서식공간, 자연성이 우수한 지역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등의 존재여부 및 보전계획을 제시하였음</p>	
<p>◦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저감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및 본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저감방안 등은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에 반영·작성하여야 함</p>	<p>◦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및 본 검토의견에 제시한 저감방안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을 작성하였음</p>	
<p>2. 세부 협의내용 가. 계획의 적정성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섬진강은 하천 고유의 지형인 하중도(모래톱) 및 하중도 내 수목 등 수려한 경관을 유지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높으며, 우수한 풍광과 함께 역사와 문화가 유서 깊은 하천이므로 하천의 선형, 식생 등의 훼손을 최소화 하는 등 자연상태를 보전하여야 함</p>	<p>◦반영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지 하도정비 및 유지관리 구역이 필요한 지역을 최소화하여 계획하였음 • 재해위험에 따른 하도정비지구 8개소, 유지관리지구 12개소를 선정</p>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p>◦섬진강 하천기본계획은 국가차원 환경 분야 종합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자연자원 보전과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함</p> <p>-자연적 특성과 생태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지침* 등을 참고하여 하천의 고유성과 자연성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천생태계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p> <p>• 영향예측 및 평가시 산정과정 등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p> <p>* 「지속가능한 하천사업(소규모·전략)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2015.3,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기술 지침서(2014, 환경부)」</p>	<p>◦반영</p> <p>-금회 섬진강 하천기본계획과 상위·연관 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성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 환경보전 시책과의 부합여부를 검토하였음</p>	
<p>-하천퇴적물 준설을 포함하는 하도정비 및 하상정리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재해 관점에서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최소화 계획</p>	<p>◦반영</p> <p>-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시 하도정비 및 유지관리 구역이 필요한 지역을 최소화하여 검토하여 제시하였음</p>	
<p>2)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p> <p>◦하천의 자연성을 저하시키는 확폭, 제방 및 하도정비 등의 구조물 설치 위주의 계획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제방 여유고가 부족한 구간 중 천변저류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은 홍수터로 관리하는 등의 친환경적(비구조적) 홍수방어 대안을 우선 고려하여야 함</p>	<p>◦반영</p> <p>-하천 제방 여유고 부족한 구간 중 천변저류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은 홍수관리 지역으로 대안을 우선 검토하여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였음</p>	
<p>◦제방계획 및 하도준설(하도정비)의 필요성 및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개발계획을 최소화하여야 함</p> <p>※섬진강 유역의 홍수발생현황은 1992년 주암댐 준공으로 홍수조절효과가 발생하여 타 하천에 비해 홍수피해가 적은 것으로 조사됨(440쪽)</p>	<p>◦반영</p> <p>-섬진강 제방계획, 하도정비, 유지관리지역의 필요성, 민원, 효과, 자연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음</p>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p>◦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안분석을 통해 세부계획(축제 및 보축, 횡적시설물 재가설, 하도정비 등)의 타당성이 적절하게 비교·평가될 수 있도록, 항목별 현황 및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구간별 하천특성을 반영한 개별 시설물 설치에 대한 대안별 특성(계획의 필요성 및 장·단점,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등)을 비교·분석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p> <p>-제방계획(축제 및 보축) 등의 구간별 계획대안(수립과 미수립) 및 수단방법 대안(홍수조절지, 저류시설 설치 등)의 비교·분석</p>	<p>◦반영</p> <p>-제방계획은 여유고 부족 및 월류로 인한 침수피해 등 치수안정성 미확보로 계획된 구간으로 현하폭 및 토지이용현황, 홍수량 등을 고려하여 통수단면이 부족한 구간은 축제, 여유고 부족구간은 보축(더둑기)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음</p> <p>-제방계획 및 축제 계획에 대한 홍수조절지 등의 치수계획을 비교·검토하여 적합한 형식을 결정하였음</p>	
<p>-제방계획에 따른 구간별 호안설치 수단·방법 대안의 비교·분석</p>	<p>◦반영</p> <p>-제방계획에 따른 구간별 호안설치 설치계획을 결정하였음</p>	
<p>-개별적인 횡적시설물(보 및 낙차공, 교량)에 대해 철거를 포함한 계획대안(철거, 유지, 재가설)과 생태적 기법(여울설치 등)을 고려한 수단·방법 대안 비교·분석</p>	<p>◦반영</p> <p>-섬진강 내 설치된 횡단구조물은 수리검토 및 하천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존치, 보강 및 재가설을 결정하였으며, 금회 보 및 낙차공은 어도 설치 등 일부 보강계획을 수립하였음</p>	
<p>-공간관리계획의 변경사항, 하도정비계획(3개소), 유지관리계획의 지구별 계획대안(수립과 미수립)의 비교·분석</p>	<p>◦반영</p> <p>-공간관리계획 변경사항, 하도정비, 유지관리계획의 검토자료를 제시하고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시 최소화하여 계획하였음</p>	
<p>나.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본 항목의 현지조사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문헌조사는 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 2건만을 활용하는 등 충실한 현지 동식물상의 현황 및 영향을 분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충분한 정점을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 지침을 준용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p>	<p>◦반영</p> <p>-문헌조사시 사후환경영향영조사 내용 최신 자료 활용, 전국자연환경조사, 동계조류센서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등 총 41개의 문헌조사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으며, 현지조사시 환경영향 지침을 준용하여 추계 및 동계조류 조사 실시하였음</p>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p>-문헌자료의 경우 해당 하천을 포함하는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신뢰성이 높은 자료를 추가 분석하여 계절적 변화에 따른 동식물상의 현황결과를 충실히 반영</p>	<p>◦반영 -본 계획하천 인근의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및 소규모 환경영향조사 보고서, 전국자연환경조사, 동계조류센서스 등 신뢰성이 높은 자료들을 추가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였음</p>	
<p>-특히 문헌자료에서 확인된 법정 보호종 및 중요 항목(담수생물 및 수변식물 등)에 대한 정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중요 생물종의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p>	<p>◦반영 -문헌자료에서 확인된 법정보호종 및 중요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문헌 및 현지조사시 확인된 법정보호종 등에 대한 보전 계획을 저감방안에 제시하였음</p>	
<p>◦섬진강이 유하하는 행정구역에는 생태자연도 1, 2등급지, 백두대간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 자연환경 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공간역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하천역과 연계된 구간을 명기하고 영향예측을 실시하여야 함</p>	<p>◦반영 -섬진강이 유하하는 행정구역에 분포하고 있는 생태·자연도 1, 2등급 권역, 백두대간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에 대한 검토 후 하천역과 연계된 자연환경보전 구간을 명기하고 영향예측을 실시하였음</p>	
<p>-섬진강의 자연성을 대표하는 하도습지가 36개소가 분포(256~259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정비 및 유지관리지구로 지정하여 영향을 유발(260~275쪽)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외지에 영향을 유발하는 계획은 제외하고 보축 등 제방 및 제내지에 한하여 치수방안 수립 •하도 내 형성된 자연하천습지역은 원형보전을 원칙으로 계획 수정</p>	<p>◦반영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지 하도정비 및 유지관리 구역이 필요한 지역을 최소화하여 검토하였음 • 재해위험에 따른 하도정비지구 8개소, 유지관리지구 12개소를 선정</p>	
<p>•가독성이 확보된 도면에 상세한 구역경계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기초현황자료(①습지의 면적 및 구역 경계(계절적 변동 포함), ②습지 식생구조 및 우점종, 동계 조류상, ③습지서식 동물상 및 해당 하천구역 내 담수생물상)를 상세히 작성, 제시</p>	<p>◦반영 -하도습지가 포함되는 하도정비 및 유지관리 지역에 대한 가독성이 가능한 도면에 습지의 면적, 습지 식생구조 및 우점종, 횡단, 동물상 및 해당 하천구역 담수생물상 상세히 제시하였음</p>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p>◦섬진강이 현재 지니고 있는 유수역의 굴곡성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천수의 흐름에 있어 여울·흐름·괘의 반복적인 구배가 유지되어 다양한 미소서식처가 유지되어야 함</p>	<p>◦반영 -섬진강의 유수역의 굴곡성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천수의 흐름에 있어 여울·흐름·괘의 반복적인 구배가 유지되어 다양한 미소서식처가 유지되도록 계획하였음</p>	
<p>-다양한 하상구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계획구간에 위치한 타 지류와의 합류지점은 하천의 연속성과 연결의 자연성이 보전되도록 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p>	<p>◦반영 -섬진강의 다양한 하상구조를 최대한 보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음</p>	
<p>-상류역 및 중류역의 다양한 자연식생들을 최대한 보전하고 우점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식생에 대해 이들의 분포를 제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p>	<p>◦반영 -섬진강 상류역의 유지관리지구를 제외함으로써 식생에 훼손을 최소화하였음</p>	
<p>-하류역의 하중도, 기수역의 수변 및 하도의 원형보존</p>	<p>◦반영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시 하도정비 및 유지관리 구역이 필요한 지역을 최소화하여 검토하였음</p>	
<p>◦섬진강은 하중도 및 사질토의 순환성이 뛰어난 하천으로 일부 하천역에 퇴적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적 특성이 있어 다양한 하천습지역이 형성되고 하천의 생물다양성 증진에 중요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하도정비를 최소화 하여야 함</p> <p>-하도정비지구(3개소)로 지정(29, 381~382 쪽)계획은 민원 사유(하도정비1, 3지구) 및 한수천의 합류부의 퇴적도에 의한 유수소통 저하를 사유(하도정비2지구)로 계획하고 있으나, 범위 및 규모 설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자료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p> <p>-따라서, 본 계획을 보전적 측면에서 재검토하여 하도정비 이외의 방안을 수립하거나 유수역의 복원을 원칙으로 최소한의 규모로 재설정하는 방안 제시</p>	<p>◦반영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지 하도정비 및 유지관리 구역이 필요한 지역을 최소화하여 반영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위험에 따른 하도정비지구 8개소, 유지관리지구 12개소를 선정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p>◦횡적시설물은 하천의 연속성과 생물의 분산능력 및 통수효과를 저해하므로 보강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존치(보강)목적이 없거나 불분명할 경우는 이를 지양하고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p>	<p>◦반영 -섬진강 횡적시설물(교량, 보, 낙차공)의 수리적 특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존치, 보강, 철거, 신설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음</p>	
<p>-생태적 기법을 적용하거나 탄력적으로 보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적 기법(무단차 여울형, 가동보 등)을 적극 고려하는 등의 최선의 환경친화적 기법을 적극 검토</p>	<p>◦반영 -섬진강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보·낙차공은 시설물 능력검토를 실시하여 치수적 안전성을 우선 검토하였고, 현장 조사를 통해 현재 이용 현황, 노후유무 및 어도설치 유무 등을 검토 어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음</p>	
<p>•계획평면도에 낙차공의 위치를 표기하고 현장사진을 포함한 현황 분석자료 제시</p>	<p>◦반영 -계획평면도에 낙차공의 위치를 표기 및 현장 사진, 현황분석 자료를 제시하였음</p>	
<p>•면밀한 검토를 시행하여 노후되었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낙차공은 철거하여 유수의 자연적 흐름을 방해하는 인공적 구조물의 수를 감소시키도록 계획에 반영</p>	<p>◦반영 -섬진강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보·낙차공은 시설물 능력검토를 실시하여 치수적 안전성을 우선 검토하였고, 현장 조사를 통해 현재 이용 현황, 노후유무 및 어도설치 유무 등을 검토 어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p>	
<p>•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유량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하천역에는 하상의 준위를 낮추고 소(꿈)를 형성하여 좁으로써 인공적 구조물의 보강 및 재가설 최소화</p>	<p>◦반영 -섬진강의 보·낙차공은 12개소는 물받이, 바닥 보호공으로 보강하며, 어도가 없는 4개소에 대하여 자연친화적인 어도를 추가할 계획임</p>	
<p>◦추가적인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정보호종이 확인된 하천구역의 수변식생과 하상은 원형보전을 우선 검토하고, 불가피한 축제 및 보축공사를 계획할 시에는 하상에 교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p> <p>-법정보호 조류 산란지 등의 서식역은 원형 보존하고, 이들의 분포를 제한하지 않는 계획 수립</p> <p>•법정보호 수조류의 산란 및 서식지로 확인된 하천구역은 이들의 서식역 보존을 위한 구역으로 명확히 명시(좌표 및 하천개수계획도 표기)</p>	<p>◦반영 -추가적인 동·식물상 조사 실시하여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및 출현 위치를 하천개수계획도에 표기하여 최대한 보전하였음</p> <p>-현지조사시 확인 법정보호 조류의 위치는 명기하고 주요 번식기인 봄철에는 투입장비와 작업량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차량 및 장비의 속도 제한, 경적 자제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p>	
<p>•삼과 수달 등 법정보호 포유류가 확인된 하천의 하천-산림(농경지) 연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계획에 반영</p>	<p>◦반영 -하천-산림 연결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호안(식생옹벽블럭, 식생호안블럭) 적용 및 가물막이, 오탁방지막, 가배수로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p>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하천 중상류역에 연계된 산간계류와 중·하류역에서 평지하천이 유입되는 합류부의 고유한 하천구조 및 기능적 특성 유지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지류 합류부의 주변 환경은 마을, 도로 등으로 기 단절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오탁방지막, 가배수로, 침사지 등의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한 보호수(노거수)의 서식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들의 서식이 포함되는 사업구간을 명기하여 보존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보호수 및 노거수의 위치를 명기하고, 보호웬스, 방진망 설치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과 하천의 연결부는 자연성을 최대한 보전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오탁방지막, 가배수로, 침사지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군 및 어류 중 한국고유종이 출현한 구간을 상세히 명기하고 이들 구간에 대한 하상교란이 유발되지 않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상기 종의 산란시기를 고려하여 공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개체군의 유지를 위한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고유종의 산란시기시 공사 지양 및 단계별 공사 등을 통해 고유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토록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 예정인 호안공법들은 구간별로 명확한 형식을 확정하여야 하며, 그 형식은 하천의 생태계가 개선되고 복원될 수 있는 공법인지 여부를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호안공법들은 구간별로 자연석쌓기, 자연석 호안, 식생호안블럭 등과 같은 친환경적인 공법을 선정하여 각 종 생물이 호안표면에서 제방으로의 이동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이들 구간에 대한 위치 및 호안 단면도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생의 도입을 저해(자연석 쌓기, 석축, 홍수방어벽 등의 형식)하고, 육수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법들은 적용을 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식생의 도입을 저해하고 육수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법들은 최대한 지양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생태계의 복원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며 식생의 도입이 우수하고 호안의 안정성도 유지하는 환경친화적인 공법들을 조사·비교하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하천생태계의 복원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며 식생의 도입이 우수하고 호안의 안정성도 유지하는 환경친화적인 공법들을 조사·비교하여 제시하였음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p>◦수달, 삵 등 이동성이 높은 법정보호종을 보호하고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대상 과업구간을 300~500m 단위의 하천구역으로 구분한 후, 이들 각 구역의 정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일정기간별로(격월제 또는 계절별) 정비를 실시하는 계획을 반영하여야 함</p>	<p>◦반영 -수달, 삵 등 이동성이 높은 법정보호종을 보호하고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대상 과업구간을 하천구역으로 구분 후 각 구역별로 단계별(격월제 또는 계절별 상황 고려) 공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실시할 계획임</p>	
<p>◦귀화식물 분포의 증가는 수변생태계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제거 및 관리방안을 함께 고려한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함</p>	<p>◦반영 -섬진강 내 전체적으로 귀화식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계획구간 내 분포하고 있는 종들은 주변지역으로의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제거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p>	
<p>나)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본 계획으로 인하여 자연형이 우세한 지역 및 모래톱, 하중도 등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준설계획 최소화 등 하천 고유의 자연지형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사행구간을 포함하여 자연성이 유지되거나 자연형 우세지역 및, 자연환경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모래톱, 하중도, 자갈 우세지역은 준설 등 정비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하천의 토사는 자연환경 상 중요한 기능을 가진 경우도 있으므로 치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존치하는 방안 검토</p>	<p>◦반영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지 하도정비 및 유지관리 구역이 필요한 지역을 최소화하여 검토하였음 • 재해위험에 따른 하도정비지구 8개소, 유지관리지구 12개소를 선정</p>	
<p>◦자전거 길을 계획하려는 경우 제외지 보다는 제방(독마루)을 활용하여 하천구역(제외지)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함</p>	<p>◦반영 -섬진강 자전거도로는 현재의 토지이용, 도로, 제방, 기정 자전거도로 등을 고려하여 고수부지, 제방도로 및 데크설치 자전거도로를 계획하였음</p>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p>다)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p> <p>◦하천구역 내 수목 및 모래톱 등 수변경관이 우수한 지역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인위적인 시설물 도입을 최소화하여야 함</p>	<p>◦반영</p> <p>-인위적인 시설물은 최소화하고 자연형 호안 등을 계획하였음</p>	
<p>-식재되는 식물종은 현지 수변식생을 중심으로 계획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이질적인 경관이 조성되지 않도록 계획</p>	<p>◦반영</p> <p>-식재되는 식물종은 현지 수변 식생을 중심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였음</p>	
<p>-사업 시행 전후 경관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지점에서 축제, 호안, 교량설치 등에 따른 계획을 반영한 경관시뮬레이션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관계획 수립</p>	<p>◦반영</p> <p>-본안시 주요 지점(축제, 호안, 교량설치 등)에 따른 경관시뮬레이션 시행하였으며, 자연형 호안 등을 계획하였음</p>	
<p>◦대상 하천 구간 중 호안이 현재 자연형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산지나 초지 등 자연경관 요소와 연결한 구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호안 등 시설물 조성을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필요함</p> <p>-상기 구간에 하천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그 필요성을 명시하고 이격거리 및 단면도, 공사용 가도 등을 도면으로 작성하여 시설물 설치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시</p>	<p>◦반영</p> <p>-금회 하천기본계획 수행 시 축제, 보축, 저수 호안 및 시설물 설치 구간에 대해 수리특성 및 사면의 포락 여부 등을 검토하여 현재 양호한 자연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p>	
<p>라) 수환경의 보전</p> <p>◦현재 섬진강의 수질은 환경부 고시(제2018-6호)에서 명시한 중권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수질등급 Ⅰb)을 일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362~370쪽), 장래 개발에 따른 오염부하량 증가 시 목표달성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시행 가능한 수질개선 및 오염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본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p>	<p>◦반영</p> <p>-목표기준 달성을 위해 저감시설 설치 시 현장여건에 맞춰 최적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임</p>	
<p>-하천수질 악화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계획하천에 대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표면 오염물질 제거, 강우유출수의 하천 직접유입 방지, 유역 내 비점오염원 저감 방안 제시</p>	<p>◦반영</p> <p>-비점오염물질이 직접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행 계획 수립시 반영할 계획</p>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p>◦섬진강 국가하천 구간을 포함해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하천구간에서 시행된 하천정비 이력* 및 과거 홍수피해 이력과 재해위험지역,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을 검토하여 치수계획의 효용성 및 수단·방법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함</p> <p>-기수립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된 실시계획의 위치와 규모 등 하천정비 이력 제시</p> <p>*섬진강 국가하천 구간에 대해 2009년 하천 기본계획을 기 수립 후 유관기관 및 지자체에서 각종 하천개수사업 및 하천시설물 설치 등의 하천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기술(15쪽)</p>	<p>◦반영</p> <p>-기수립 하천기본계획 및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관련계획에 대해 조사하여 제방정비 이력, 과거 홍수피해이력, 재해위험지역 등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기술하여 치수계획의 효용성 및 타당성을 제시하였음</p>	
<p>◦본 계획은 홍수방어와 같이 하천의 일차적인 기능에 편중하여 대규모 개수계획 및 하도정비(준설), 하상정리 등 하천의 자연성 훼손 우려가 높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섬진강 국가하천이 치수적으로 취약하여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보전과 복원 계획이 균형을 이루는 친환경적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p>◦반영</p> <p>-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시 하도정비의 필요성, 민원, 효과, 자연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하천환경이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하도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음</p>	
<p>-기수립 대비 금회 계획홍수량은 대부분의 산정지점에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456쪽), 개수 및 하도정비 등의 타당성 제시</p>	<p>◦반영</p> <p>-감소의 원인은 설계홍수량 산정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전국하천유역 홍수량과 비교검토하여 현 시기에 맞는 계획홍수량을 적용하였음</p>	
<p>-설계기준(홍수량 크기)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하도 전구간의 치수안정성을 확보하는 시설물 위주의 과도한 치수계획 수립 지양</p>	<p>◦반영</p> <p>-‘설계홍수량 산정요령(2012.9,국토부)’에 따라 주요 지점에 대한 계획홍수량을 산정하였고, 홍수위 이하 구간으로 월류로 인한 홍수피해 위험지역에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수계획을 수립하였음</p>	
<p>-최근 개수가 완료되었거나 현재 하천정비 공사가 진행 중(계획 포함)인 하천 구간에 대해서는 금회 개수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p>	<p>◦반영</p> <p>-하천설계기준 등에 따라 개수계획을 수립하였고, 능력검토를 통해 계획 수립구간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였음</p>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계획하폭 결정 시 획일적인 하폭확장을 지양하고, 기존 제방 상태, 하천시설물, 토지이용 현황, 용지취득 난이도, 지형·지질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홍수소통에 필요한 적정 하폭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하천설계기준·해설에 따라 계획하폭을 참고하였으며, 현재하폭, 토지이용현황, 유로형상 등 제반요인을 감안하여 계획하폭을 결정하였음 	
-유로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하천구간을 명시하고 변경 전·후의 잠재적 위험성을 비교·검토하여 유로변경계획의 불가피성과 당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유로변경구간은 없음 	
-개수 전 홍수위에 대한 제방 여유고의 부족도가 크지 않거나 현하폭과 계획하폭의 차이가 미미한 경우 현하폭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방 여유고를 확보하는 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설계홍수량 산정요령(2012.9,국토부)’에 따라 주요 지정별 홍수량을 산정하였으며, 현하폭 및 토지이용현황, 홍수량 등을 고려하여 통수단면이 부족한 구간은 확폭 및 축제, 여유고 부족구간은 보축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음. 	
-제방으로 인해 보호되는 시설의 면적이 작거나 기설제방의 여유고가 미미한 수준일 경우, 월류 가능성을 검토한 후 제방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배후지가 협소하여 보호면적이 작은 구간의 경우 홍수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계획을 최소화하였음 	
-우수한 산림역(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과 연계된 하천 구간은 수변경관 및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전하는 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계획구간 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불가피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재가설이 계획된 교량 중 연장과 여유고가 충분한 경우, 경간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최근 신설된 교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존치하는 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교량 능력검토를 실시하여 능력이 부족한 교량은 보강 또는 철거 계획을 수립하였음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p>◦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자료들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아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하천개수 및 시설물 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보강·제시하여야 함</p>	<p>◦반영 -금회 섬진강에 대한 기존 시설물에 대해 능력 검토를 시행하였으며, 능력검토를 통해 부족한 시설 설치(보강, 신설, 철거 등)를 계획하였음</p>	
<p>-섬진강 국가하천 구간에서 발생한 홍수피해 이력을 구체적으로 조사·제시</p>	<p>◦반영 -‘침수흔적종합보고서’ 및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발생한 홍수피해이력에 대해 조사·제시하였음</p>	
<p>-금회 과업구간에 대해 기수립 당시의 개수 계획 및 하도준설, 하상정리, 친수공간 조성 등과 관련한 시설물 계획을 조사·제시하고 각 내용별로 금회 계획과 비교</p>	<p>◦반영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기수립 당시의 축제, 제방, 저수호안 계획에 대하여 제시하였음</p>	
<p>-기수립 기본계획에 따른 실시계획 추진 여부를 명시하되, 해당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p>	<p>◦반영 -기수립 기본계획에 따른 실시계획 이력을 제시하였음</p>	
<p>-사업효과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개수 전·후의 홍수위를 비교·제시</p>	<p>◦반영 -개수전·후 빈도별 홍수위를 비교·제시하였음</p>	
<p>-측정별 개수 전·후의 홍수위에 대한 제방 여유고의 과부족 검토결과를 제시하고, 동 자료에 제방계획 및 하도정비, 하상정리 수립구간 표기</p>	<p>◦반영 -개수전·후 홍수위에 대한 여유고 과부족 검토 결과 및 해당구간에 대한 계획, 하도정비구간을 표기하였음</p>	
<p>-개수계획(489쪽)은 지구별 위성사진, 현장사진, 대표 단면도를 포함하여 하천 현황 및 제내지 토지이용, 치수적인 문제점 등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정비방향과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제시</p>	<p>◦반영 -개수계획 지구별 사진 및 대표 단면도를 제시하였으며, 문제점 등을 조사하여 사업내용을 제시하였음</p>	
<p>-하도정비가 계획된 3개 지구(498쪽)에 대해서는 각 지구별 계획시행 전·후의 홍수위를 비교하여 사업효과를 평가·제시</p>	<p>◦반영 -금회 하도정비지구에 대해 계획시행 전·후 홍수위를 비교하여 제시하였음</p>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하상정리계획(499쪽)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17개 지구 선정과 관련한 판단기준(유수소통에 지장) 등의 근거자료 제시	<p>◦반영</p> <p>-하도정비 및 유지관리구역이 필요한 지역을 최소화하여 검토하였으며, 치수 및 지역민원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였음</p>	
-교량(497쪽)에 대한 능력검토 결과 및 신설 2개소에 대한 계획수립의 필요성 제시	<p>◦반영</p> <p>-교량에 대한 능력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신설 교량에 대해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p>	
-전체적인 사업규모 및 초안 대비 시설물계획 변경 내용 파악이 가능하도록 총괄표(시설물계획별 합계를 포함) 작성과 함께 변경 사유 제시	<p>◦반영</p> <p>-시설물 계획에 대하여 초안 대비 변경 내용을 표에 작성하여 제시하였음</p>	
<p>2) 생활환경의 안정성</p> <p>가) 환경기준의 부합성</p> <p>◦재가설, 신설, 철거, 또는 이설이 계획된 교량, 보/낙차공에 대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성상·종류별로 산정하고, 각 시·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본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매립, 소각, 재활용 가능량을 정량적으로 계획·반영하여야 함</p>	<p>◦반영</p> <p>-금회 재가설 또는 철거되는 교량에 대한 현황 및 건설폐기물처리업체 현황 제시하였으며, ‘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각 지자체별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을 산정하여 제시하였음</p>	
<p>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p> <p>가) 환경친화적 토지이용</p> <p>◦해당계획은 기존의 보전지구(14.8만㎡) 및 복원지구(3.9만㎡)를 포함한 구간을 친수지구(총 18.7만㎡)로 변경하고자 하나, 친수지구의 설정은 국가적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자연하천인 섬진강의 자연성과 그 환경적 가치를 해칠 수 밖에 없으므로, 친수구역내 입지하고자 하는 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하고 동 시설의 배후지역내 입지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여 친수구역 설정을 최소화하여야 함</p>	<p>◦반영</p> <p>-섬진강 친수지구 변경 지역은 기존 조성된 지역 및 개발 계획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보전지역을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시 추가 지정하여 전체적인 보전지역의 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p>	
-기 친수지구로 설정되어 있는 구간의 현황을 조사하고, 활용되지 않는 주차장 등 제외지 내 훼손지역은 복원하는 방향으로 공간관리계획(지구지정) 수립	<p>◦반영</p> <p>-기 친수지구로 설정되어 있는 구간의 현황을 조사하고, 활용되지 않는 주차장 등 제외지 내 훼손지역은 복원하는 방향으로 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음</p>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p>-금회 설정된 하천 현황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친수지구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606~613쪽, ②~⑨), 가급적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당초 지구를 유지(복원지구, 보전지구)하거나 기존 시설이 조성된 구간에 한하여 친수지구 지정 등 친수지구 지정 전면 재검토</p>	<p>◦반영 -섬진강 친수지구 변경 지역은 기존 조성된 지역 및 지자체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보전지역을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시 추가 지정하여 전체적인 보전지역의 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p>	
<p>-시·군에서 수상레저사업 등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친수지구로 지정하는 계획은 지양하고, 해당 사업의 내용 및 추진 단계,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보전 또는 복원지구 내 추진 가능성 여부 등 제시</p>	<p>◦반영 -친수지구 변경구간은 기 개발된 구역, 각 지자체의 숙원사업 및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음 • 친수지구 변경구간 향후 실시계획시 관련 법령에 맞게 관련협의를 진행할 계획임</p>	
<p>-각 친수지구 변경 구간의 변경 사유를 제시하고, 해상도가 높은 위성사진 및 여러 지점에서의 현황사진 등을 제시하여 친수지구 설정의 적정성 제시</p>	<p>◦반영 -친수지구 변경 구간의 사유 및 위성사진, 현황사진 등을 제시하였음</p>	
<p>-친수지구별로 해당 구간 및 배후지역의 토지이용현황, 수질 및 하천식생현황, 이들을 고려한 하천자연도 평가결과 제시하고, 하천변 개발계획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추가 제시</p>	<p>◦반영 -친수지구별 해당 구간 및 배후지역의 토지이용현황, 수질, 하천식생현황 등을 제시하였음.</p>	
<p>◦섬진강 하천기본계획 권역 중 환경보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생태·경관 보전지역(섬진강 수달서식지),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침실습지), 군립공원(고소성), 수산자원보호구역(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옥정호, 구례, 하동) 또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에 포함 또는 인접한 구간에 대하여 하천시설물을 최소화하여야 함</p>	<p>◦반영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권역 중 법정 지정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시설물은 최소화하였음</p>	
<p>-상기 지역에 인접한 구간 중 현재 보 및 낙차공이 과도하게 조성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최대한 철거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p>	<p>◦반영 -섬진강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보·낙차공은 시설물 능력검토를 실시하여 치수적 안전성을 우선 검토하였으며, 보·낙차공의 시설물 보강 및 어도가 없는 4개소에 대하여 자연친화적인 어도를 추가 계획을 수립하였음</p>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p>-성진강 수달서식지와 인접한 금내 보축1지구와 침실습지에 인접한 고달 보축2지구 및 곡성 보축1지구 등의 경우 제방 높이의 변화 없이 독마루 폭만을 확장하도록 계획(333, 339, 340쪽)하여 수리적 측면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환경부하만 가중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계획 재검토</p>	<p>◦반영 -성진강 수달서식지와 인접한 파도보축, 금내 보축 1,2지구, 금정 보축 1지구와 침실습지에 인접한 오지보축1, 고달보축 1,2,3 지역은 하천제방 설계기준의 여유고 및 독마루폭이 부족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되도록 기존 제방을 제내지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p>	
<p>III. 기타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제시한 세부평가항목에 적합하게 작성·제시하여야 함</p>	<p>◦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제시한 세부평가항목에 적합하게 작성·제시하였음</p>	
<p>◦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최대한 정량화하여야 함</p>	<p>◦반영 -평가서상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p>	
<p>-특히,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 인적 사항 및 조사자 의견을 첨부 제시하고 장래 환경영향 예측(예측조건, 예측적용 방법, 예측 시 사용계획, 수치 등)은 그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p>	<p>◦반영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 인적 사항 등을 제시하며, 환경영향 예측은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음</p>	
<p>-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은 그 근거를 기술하고,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본 등의 근거자료 제시</p>	<p>◦반영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은 그 근거를 기술하고,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거자료를 제시하였음</p>	
<p>◦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본 의견과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 제시(각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구분)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에 작성·제시하여야 함 -본 의견보다 강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에 대한 그 사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p>	<p>◦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초안 의견과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 제시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 작성시 제시하였음</p>	

2. 전북지방환경청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p>◦계획의 대안과 관련하여 섬진강 본류와 지류의 홍수빈도가 확실적으로 같을 수 없으며(초안 171쪽), 홍수빈도 선정에 따라 하천의 홍수량 산정 및 관리계획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홍수량 산정기법 외에도 본류와 각 지류의 계획홍수빈도를 대안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함.</p>	<p>◦반영 -해당 내용은 상위 관련계획인 ‘섬진강 유역 종합치수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금회 섬진강 하천기본계획은 섬진강 본류 국가하천 구간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류하천은 포함되지 않았음</p>	
<p>-멸종위기야생생물 임실납자루 등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천공사구간을 일정구간으로 구획하고, 공사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순차적·시기별로 공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순서와 관련한 대안을 검토하여야 함.</p>	<p>◦반영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천공사구간을 일정구간으로 구획하고, 통합지표(경제성, 위험성, 지속가능성)에 따른 공사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순차적·시기별로 공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p>	
<p>◦모든 하천구간에 대하여 홍수예방사업을 할 것인지(Action), 말 것인지(No Action)를 대안으로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산정된 홍수량에 따라 각 구간별로 실현가능한 다양한 하천 정비방안에 대하여 홍수예방효과, 환경성, 주민의견 등을 실질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p>	<p>◦반영 -예방계획 및 축제 계획에 대한 홍수조절지 등의 치수계획을 비교·검토하여 적합한 형식을 결정하였음</p>	
<p>◦댐 직하류 지역은 단순히 유역면적을 기준으로 홍수량을 산정하기 보다는 댐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홍수량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p>	<p>◦반영 -댐 직하류 지역은 금회 하천계획 수립 시 섬진강댐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홍수량을 산정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p>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p>◦국가습지센터에서 조사한 내륙습지와 하천 내 사업계획 구간이 중첩되는 곳이 많으므로 (260쪽~267쪽), 습지 보전·관리 정책에 위배 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만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구간의 하천정비방안 대안 비교·검토시에는 타 구간보다 환경성을 우선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p>	<p>◦반영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하도정비 및 유지 관리 구역이 필요한 지역을 최소화하여 계획하였음 • 재해위험에 따른 하도정비지구 8개소, 유지 관리지구 12개소를 선정</p>	
<p>-옥정호 선거습지 구간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을 위한 생태계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이며, 선거교 인근 유지관리 지구는 생태계 교란식물의 서식밀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하천구간 공사시 생태계 교란식물의 생육시기를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교란식물이 제거되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p>	<p>◦반영 -생태계교란 생물의 분포여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음</p>	
<p>◦덕암지구(342쪽) 호안계획은 가급적 현재 제 외지의 호안경사, 식생 등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호안단면을 설계하여야 하며, 임야지역과 하천생태계의 연결성을 고려하고, 제내지 임야지역과 하천제방사이에 토지활용도가 낮은 좁고 긴 형태의 선형 미편입지역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p>	<p>◦반영 -덕암지구의 축제계획은 현재의 호안 및 식생 등의 훼손 최소화 및 제내지 토지편입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개수계획을 수립하였음</p>	

3. 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p>◦상수원보호구역 -옥정호(정읍시 소재) 및 월락(남원시 소재)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보전 관련하여 해당 시·군 부서와 협의 요망</p>	<p>◦반영 -해당사항 없음 • 옥정호 및 월락 상수원 보호구역은 섬진강 하천기본계획에 제외되어 있음</p>	
<p>◦상수도 -상수도시설 관련 해당 시·군 부서와 협의</p>	<p>◦반영 -해당사항 없음</p>	
<p>◦개인하수, 물재이용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관련 해당 시·군과 협의</p>	<p>◦반영 -해당사항 없음</p>	
<p>◦온천, 지하수 -온천 및 지하수 관련 해당 시·군 소관부서와 협의</p>	<p>◦반영 -해당사항 없음</p>	
<p>◦토양 -토양오염 발생 또는 발견 시 즉시 해당 시·군에 신고</p>	<p>◦반영 -토양오염 발생 또는 발견 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음</p>	
<p>◦비점오염원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일정농도 이상의 토사가 공공수역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점오염저감 대책 마련 필요</p>	<p>◦반영 -공사시 토사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p>	
<p>◦수질오염 총량관리 -사업시행 전후 배출부하량 산정 제시 -사업시행 전후 증가된 배출부하량 만큼 할당 받은 후 사업추진 가능</p>	<p>◦반영 -계획시행으로 인해 점오염원은 없으므로 비점오염원(토지계)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하였으며, 검토결과 배출부하량이 감소되어 지역개발할당 부하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본 계획은 하천기본계획 단계로 개발기본계획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후 시행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수질오염총량검토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할 계획</p>	

4. 전라남도 도민행복 소통실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p>◦대상 하천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제방, 구조물 등)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하천 생태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p>	<p>◦반영 -섬진강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수립하였음</p>	
<p>◦「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 될 경우, 승인기관에서는 사업 승인시 20일 이내에 부과기관인 우리 도 동부지역본부(기후생태과)에 승인내역을 제출하여야 함</p>	<p>◦반영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시 승인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음</p>	
<p>◦공사시 자연지형 변화, 식생훼손 및 토사유출에 따른 동·식물상, 법정보호종 등 생태계 피해가 예상되므로 각 영향 요인별로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p>	<p>◦반영 -공사시 자연지형 변화 식생훼손 및 토사유출에 따른 동·식물상, 법정보호종 등에 따른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p>	
<p>◦교량 및 독마루 등 계획 시 우수로 인한 비점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지역 특성에 맞는 공법을 반영하여야 함</p>	<p>◦반영 -비점오염물질이 직접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할 계획</p>	
<p>◦교량, 낙차공 등은 하천의 자연성 유지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생태계를 보전·복원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p>◦반영 -섬진강 내 설치된 횡단구조물은 수리검토 및 하천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존치, 보강 및 재가설을 결정하였으며, 금회 보 및 낙차공은 어도 설치 등 일부 보강계획을 수립하였음</p>	
<p>◦어도 설치 시에는 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어류의 특성 및 현장여건(경사면, 유속) 등을 고려하여 생태환경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p>	<p>◦반영 -섬진강의 보·낙차공은 12개소는 물받이, 바닥 보호공으로 보강하며, 어도가 없는 4개소에 대하여 자연친화적인 어도를 추가할 계획임</p>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p>◦계획 지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에 해당하므로 물환경 목표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p>	<p>◦반영 -계획시행으로 인해 점오염원은 없으므로 비점오염원(토지계)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하였으며, 검토결과 배출부하량이 감소되어 지역개발할당 부하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목표기준 달성을 위해 저감시설 설치 시 현장여건에 맞춰 최적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임</p>	
<p>◦공사시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하여 하천 수계에 악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오탁방지막·침사지 등은 수시로 점검·관리하여 효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p>	<p>◦반영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하천 수계에 악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저감시설을 계획하였으며, 저감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유지관리를 시행할 계획임</p>	
<p>◦장비의 가동, 작업차량 진·출입, 야적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살수, 세륜 및 세차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p>	<p>◦반영 -공사시 비산먼지에 대한 살수, 세륜 및 세차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p>	
<p>◦공사시 소음·진동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철저히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소음 기준초과가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방음시설을 적정 설치하고 주민사전 협의 등 민원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p>	<p>◦반영 -공사시 소음·진동에 대한 가설방음판넬, 공사조절 등의 일반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p>	
<p>◦공사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공사 장비의 폐유 등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p>	<p>◦반영 -공사시 발생하는 폐유, 건설폐기물 등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였음</p>	
<p>◦환경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인·허가는 사전에 득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p>	<p>◦반영 -공사시 환경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인·허가는 사전에 득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음</p>	
<p>◦공사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나 민원이 발생될 경우, 별도의 대책 및 민원해결 방안 등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야 함. 끝.</p>	<p>◦반영 -공사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나 민원이 발생될 경우, 별도의 대책 및 민원해결 방안 등을 신속히 강구·시행하도록 하겠음</p>	

5. 경상남도 하천안전과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섬진강 배수위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에 대한 홍수방어능력 검토 ◦주변 환경의 세밀한 검토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 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금회 섬진강 하천기본계획은 섬진강 본류 국가하천 구간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류하천은 포함되지 않았음 	

6.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1.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계획은 국가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연친화적인 정비·보전 등을 위한 섬진강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향후 정비사업 등 계획시는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절한 환경피해 예방(저감) 대책을 마련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절한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 시설물 설치 등 계획 수립·시행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자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친환경 녹색제품(환경표지, 우수재활용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하천 시설물 설치 등 계획 수립·시행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자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친환경 녹색제품(환경표지, 우수재활용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 퇴적물 등의 오염물질 및 유류 유출, 운영 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하천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은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비점오염저감대책 수립 및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공사시 토사, 퇴적물 등의 저감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은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비점오염저감대책 수립 및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초 협의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지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p>2.자연환경</p> <p>◦사업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자연생태현황을 조사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우수한 하천생태 형성구간 및 식생이 우수한 구간은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것.</p>	<p>◦반영</p> <p>-자연생태 현황을 문헌조사 및 직접조사를 시행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였음</p>	
<p>◦계획 수립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생태자연도 등급권역별 해당 기준을 고려하여야 함.</p>	<p>◦반영</p> <p>-계획 수립시 생태자연도 등급권역별 해당 사업을 고려하였음</p>	
<p>◦다음에 해당될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므로 인·허가등을 한 경우 20일 이내 도 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p> <p>-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p> <p>-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p> <p>-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반영</p> <p>-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진행 시 승인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음</p>	
<p>◦계획지역 중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보전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개발보다는 보전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함.</p>	<p>◦반영</p> <p>-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정 보호지역 인접한 지역은 직접적인 계획은 제외하고 부득이하게 제내지 구간으로 독마루둑 등의 확장을 계획하였음</p>	
<p>◦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환경 변화 및 야생동물 서식지 영향 여부를 수시 모니터링하고, 멸종위기 보호종 등 발견시는 신속한 조치 및 서식지 보전 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함.</p>	<p>◦반영</p> <p>-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환경 변화 및 야생동물 서식지 영향여부를 검토하고 법정보호종 발견시에는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음</p>	
<p>◦사업예정지 및 주변 지역으로, 공사시 야생생물의 생태계 피해가 예상되므로, 야생동물 이동로가 단절되는 구간에는 탈출용 경사로(촉구)설치 등 저감대책을 강구·제시하여야 함.</p>	<p>◦반영</p> <p>-향후 실시계획시 사업예정지 및 주변 지역으로 야생생물의 생태계 피해가 예상되는 구간에는 탈출용 경사로(촉구) 설치 등 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음</p>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p>◦사업구간 및 주변지역에 생태계교란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경우 사업과정에서 인위적인 확산과 식생변화 예방을 위한 사전제거 관리 대책이 검토되어야 함.</p>	<p>◦반영 -생태계교란 생물의 분포여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음</p>	
<p>◦하천 정비 과정에서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여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특히 어류 등의 산란시기를 고려하여 공사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함.</p>	<p>◦반영 -하천 정비 과정에서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을 최소화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음</p>	
<p>3.폐기물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하동군 폐기물 처리계획,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처리 규정 등을 준수하여 적정 처리 하여야함</p>	<p>◦반영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각 지자체 폐기물 처리계획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처리하도록 하겠음</p>	
<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이 100톤 이상 발생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여야 함</p>	<p>◦반영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이 100톤 이상 발생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도록 하겠음</p>	
<p>◦훼손 임목 발생시 조경수, 원목자재, 연료목재 등으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하여야 하며 임목폐기물로 처리되는 양을 최소화 하여야 함.</p>	<p>◦반영 -공사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수목은 조경수, 원목자재 연료목재 등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음</p>	

7. 정읍시 환경과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본 사업 구간에 있는 법정 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호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반영 -법정보호종 서식지의 계획에 따라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야생 동·식물의 서식환경으로 이용되는 하천 식생 및 지형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인공 구조물이나 제방 포장도로 설치에 의한 야생동물의 이동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로 및 유도 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노선변경, 교량화, 어도 설치 등 대안을 검토하여야 함)	◦반영 -하천 식생 및 지형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인공구조물의 설치로 야생동물의 이동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	
◦하상의 평탄화 등으로 인한 서식환경 단편화 및 기존 생태계의 파괴로 생물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하천 형태를 기초로 물길의 선형/곡선, 깊이, 넓이 경사도 등 물리적 환경을 다양하게 유지·조성함으로써 물리적 환경의 단편화(바닥 평탄화, 사면 직선화 등)를 지양하게 조성함으로써 생물 서식지로서의 하천습지 기능을 보전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반영 -하천의 인위적인 변경은 지양하고 하천습지 기능을 가능한 보전하는 대책을 수립하였음	
◦교량공사, 제방축조 등으로 발생하는 토사유출이 하천, 습지 등의 담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반영 -교량공사, 제방축조 등으로 발생하는 토사유출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오염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 저감시설 등을 사전에 강구·시행하여야 함	◦반영 -본 사업시행시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 저감시설 향후 실시계획서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음	
◦해당 사업대상지역 주민과 이해 당사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민원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함. 끝.	◦반영 -해당 사업대상지역 주민과 이해 당사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음	

8. 남원시 건설과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남원시 대강면 신덕리 920-10 일원과 금지면 상귀리 588-1 일원 고수부지에 대하여 수변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및 방문객(자전거 도로 이용객)들을 위한 휴식·레저공간 조성으로 친수기능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친수지구 지정 검토 요망	◦반영 -남원시 대강면 방독리 일원 및 금지면 상귀리 일원에 대하여 현재 개발현황(묘목장, 유채꽃 축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수지구로 계획하였음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51 일원 만곡부에 대하여 퇴적도 준설 및 잡목제거를 위한 하도정비 및 유지관리지구 지정 검토 요망	◦반영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일원 만곡부의 유지관리지구5지역으로 생태수로(셋강) 형태의 하상을 계획 하였음	
◦제외지의 침수피해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배수시설(배수문, 배수암거, 배수통관) 유말부 하상정비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요망	◦반영 -제내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통수능이 부족한 배수시설물에 대하여 재설치를 계획하였으며, 제내지 지반고가 계획홍수위 이하인 배수시설의 경우 자동문비 설치를 계획하였음	-

9. 임실군 안전관리과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 하도록 요청	◦반영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음	
◦공사시행으로 육·수상동물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구간별 수생태계 오염예방 대책 등을 계획 후 공사 추진 요청	◦반영 -공사시 육·수 동물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공사시행시 비산먼지로 인하여 농경지 등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	◦반영 -공사시 비산먼지로 인한 농경지 등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방안 수립하였음	
◦공사시행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해 인근 마을 등 피해가 없도록 요청	◦반영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공사시행시 토사유출로 인한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저감방안 (비우기공사, 가배수로 선시공, 사면보호시설 우선 설치, 하류부 오탐방지망 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요청	◦반영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수환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수립하였음	

10. 임실군 환경보호과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1.총괄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사업 시행시 다음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2.항목별 검토의견 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공사시 토사 유입으로 인한 탁수 등으로 서식지 교란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산란시기 4월~ 6월에 가급적 대규모 공사는 억제하고 소규모 공사를 실시하는 등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훼손이 최소화 되어야 함.	◦반영 -공사시 토사 유입으로 인한 탁수 등으로 서식지 교란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산란시기 4월~ 6월에 가급적 대규모 공사는 억제하고 소규모 공사를 실시하는 등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음	
나) 자연환경자산 ◦계획지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이 산재되어 있어 공사시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하며 야생생물구역 30개소, 섬진강 수달서식지 및 섬진강 침실습지, 옥정호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특히 섬진강 구역내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가 많은바 습지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세부계획이 반영되어야 함.	◦반영 -공사시 토사유출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법정보호구역 및 습지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개발계획을 최소화 하였음	
다) 수환경의 보전 ◦본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추진하게 될 공사 및 정비시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 유류 유출, 오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저감 대책 및 오염사고에 대비한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반영 -계획수립 후 실시설계시 하천 공사 및 정비시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 유류유출, 오수 등으로 인한 구체적인 수질오염 저감 대책 및 오염사고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라) 지형 및 생태축 보전 ◦본 계획 수립에 따른 지형변화가 예상되나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현재의 하도선형을 유지토록 하고 강우시 토사유출에 의한 생태계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우기시 작업을 최소화 할 것.	◦반영 -하천의 선형의 변경은 없으며, 강우시 토사유출에 의한 생태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p>마) 환경기준 부합성(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및 소음·진동)</p> <p>◦계획수립 후 세부사업 시행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p> <p>◦각종 건설기계, 장비로 인한 대기 및 소음에 대한 저감계획 수립(장비공회전 금지,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적절한 작업시간대 관리, 차량운행속도 등)으로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p>	<p>◦반영</p> <p>-계획수립 후 실시설계시 공사시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음</p>	
<p>바)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p> <p>◦계획수립 후 세부사업 시행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폐기물은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하고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에 적합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p>◦특히 공사기간중 장비 및 폐유 교환 등으로 발생하는 폐유 등은 원칙적으로 즉시 처리업체 위탁처리 하고 부득이한 경우 폐유보관소를 설치하여 보관기간 및 방법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p>	<p>◦반영</p> <p>-계획수립 후 실시설계시 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폐유 등) 발생시 분리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음</p>	

11. 순창군 환경수도과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p>◦섬진강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검토한 결과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수질오염총량 협의 대상이므로 본안 협의시 수질오염총량분에 대한 협의한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p>	<p>◦반영</p> <p>-계획시행으로 인해 점오염원은 없으므로 비점오염원(토지계)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하였으며, 검토결과 배출부하량이 감소되어 지역개발할당 부하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p> <p>-본 계획은 하천기본계획 단계로 개발기본계획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후 시행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수질오염총량검토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할 계획</p>	

12. 순천시 생태환경과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p>1.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p> <p>◦지구지정 계획에 보전 및 복원지구는 187천㎡ 감소하는 반면 친수지구는 187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기존 복원, 보전 계획을 검토하여 자연성, 생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친수공간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p>◦반영</p> <p>-섬진강 친수지구 변경 지역은 기존 조성된 지역 및 지자체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보전지역을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시 추가 지정하여 전체적인 보전지역의 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p>	
<p>◦축제계획 및 보축계획 수립 시 식생매트, 식생블럭 등은 친환경 건설자재를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p>	<p>◦반영</p> <p>-축제 및 보축계획 수립 시 식생매트, 식생블럭 등의 친환경 건설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였음</p>	
<p>◦화합의 다리(No. 17+500), 남도2대교(No. 26+000) 신설교량은 반드시 필요한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사유를 제시하고 경관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p>	<p>◦반영</p> <p>-화합의 다리 및 남도2대교 신설교량 계획은 섬진교~남도대교간 거리가 19km로 하동-광양 두 지역간 단절로 인한 교류 및 교통 불편사항 등 개선이 필요한 바 교량계획을 수립하였음</p>	
<p>◦유지관리지구 1~17은 퇴적토 및 식생발달로 인한 지장을 주는 유수소통 등 안정된 하상을 유지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바, 유수소통의 지장을 주는 근본 원인을 제시하고 섬진강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자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p>	<p>◦반영</p> <p>-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지 하도정비 및 유지관리 구역이 필요한 지역을 최소화하여 계획하였음</p> <p>• 재해위험에 따른 하도정비지구 8개소, 유지관리지구 12개소를 선정</p>	
<p>◦또한, 계획구간 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불가피 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p>	<p>◦반영</p> <p>-계획구간 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불가피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p>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p>2. 소음·진동 및 대기분야</p> <p>◦최종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환경영향 조사 및 예측을 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p> <p>◦공사 시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으로 인해 주요 정온시설(마을, 축사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함</p> <p>◦장비투입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야생동물 이동이 예상되나 이동로 및 야생 동식물의 대체 서식공간 확보 등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p>	<p>◦반영</p> <p>-사업계획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p> <p>◦반영</p> <p>-공사 시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p> <p>◦반영</p> <p>-투입장비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검토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p>	
<p>3. 수질분야</p> <p>◦하천공사 시는 하천 육수생물 보호를 위하여 주 산란기인 봄철(3~5월) 공사를 지양하고, 토사유출을 최소화하는 공사계획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p> <p>-토사유출로 인한 저감방안으로 오탁방지막 설치계획이 제시되어 있는데, 필요시 2중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p>	<p>◦반영</p> <p>-하천공사 중 하상공사는 육수생물 보호를 위하여 주 산란기인 봄철 공사를 지양하고 토사유출을 최소화하는 공사계획을 수립하였음</p> <p>• 오탁방지막은 필요시 2중으로 계획</p>	
<p>4. 자연환경분야</p> <p>◦섬진강 계획구간은 문헌조사에서 법정보호종인 수달, 삿, 붉은배새매, 맹공이, 황조롱이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공사 시 문헌조사에 확인된 법정보호종이 발견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p> <p>◦사업 시행 시 야생동물의 서식처, 이동로 등이 훼손 단절될 수 있는 바, 각 영향요인별로 필요한 생태영향 저감시설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제시하여야 함</p> <p>-사업부지 내·외 생태축 현황을 조사하고 생태 이동로 및 연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p>	<p>◦반영</p> <p>-문헌자료에서 확인된 법정보호종 및 중요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문헌 및 현지조사시 확인된 법정보호종 등에 대한 보전 계획을 저감방안에 제시하였음</p> <p>◦반영</p> <p>-사업부지 내·외 생태축 현황을 조사하고 생태 이동로 및 연결성이 훼손도지 않도록 하겠음</p>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p>◦하천 내 축제, 보축 등 하천 내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생태계 교란종의 서식을 방지하고 고유 식물상의 교란을 최소화하여 수변식생 군락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p>	<p>◦반영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시에는 생태계 교란종의 일반적인 제거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음</p>	
<p>4. 기타 ◦공사 시 사업지구내 공사장비를 주차할 경우, 주차구역내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수정 설치 등 적정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p>	<p>◦반영 -공사 시 사업구간내(하천구역)에서는 공사이외에는 별도의 주차구역 및 주차를 지양하도록 하겠음</p>	
<p>◦환경영향 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15호)에 의하여 실시하되 동·식물은 종류별로 산란시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함 -문헌조사시 가장 최신 자료를 포함하여 최근 10년 이내의 자료를 활용하고 탐문조사시는 사업예정지역 인근 거주민,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함 -대기질 현황 조사는 최소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조사하여 영향을 예측하여야 함 -수질조사는 하천의 유황을 고려하여 갈수기, 평수기 등 최소 2시기 이상 조사하여 함 -소음·진동은 공정, 발생시기, 주변 소음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 및 운영시 소음·진동 발생이 최대치가 되는 시점을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함</p>	<p>◦부분반영 -환경영향 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을 준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음 • 문헌조사시 가장 최신 자료를 포함하여 최근 10년 이내의 자료를 활용하고 탐문조사시는 사업예정 지역 인근 거주민, 전문가 등을 활용 • 대기질 현황 조사는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에 대하여 2회(1일) 실시 • 수질조사는 문헌자료인 “섬진강 살리기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1회 직접조사 시행 • 소음·진동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 하여 계획 지역 인근 정온시설에서 2회 실시</p>	

13. 곡성군 안전건설과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p>1. 압록 보축지구 정비구간 배제 및 토사호안 정비</p> <p>◦압록 보축1지구 구간은 일부구간이 기 홍수방어벽(옹벽)이 설치됨에 따라 하천기본계획 배제 및 일부 토사구간 호안 정비구간으로 계획반영</p>	<p>◦반영</p> <p>-압록 보축1지구는 ‘곡성 섬진강변 관광명소화 사업’ 시행으로 홍수방어벽 및 고수호안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상류 주거지구간은 홍수위이하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축제계획을 수립하였음</p>	
<p>2. 두곡교 재가설 및 연결도로 하천기본계획 반영</p> <p>◦두곡교는 계획 홍수위보다 낮아 집중호우시 상시 침수되어 5.8km 떨어진 예성교로 우회를 해야 되는 실정임</p> <p>◦또한 세월교 폭 B=4.0m로 차량 교행이 어렵고, 차량 및 농기계, 자전거 통행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교량임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에 교량 반영</p>	<p>◦반영</p> <p>-두곡교는 능력검토결과 여유고 및 경간장 부족으로 교량보강 계획을 수립하였음</p>	
<p>3. 침곡-호곡간 교량 신설계획 반영</p> <p>◦섬진강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을 토대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지역이나 섬진강 주변 SOC 기반시설 부족한 실정임</p> <p>◦침곡-호곡 구간은 상하류 구간 교량과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 및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해 교량설치가 필요</p>	<p>◦반영</p> <p>-침곡-호곡 구간은 상하류에 위치한 교량과의 거리가 약 14km로 오곡면~고달면간 통행에 지장이 있어 주민 교통 편의 등을 위해 No.71+270 지점에 호곡교 신설을 계획하였음</p>	
<p>4. 고달-오곡간 고달세월교 재가설 반영</p> <p>◦고달 세월교는 폭 B=1.8m로 차량 통행을 할 수 없어 상류부 고달교로 우회 해야하는 실정임</p> <p>◦자전거, 오토바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교량임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에 세월교 재가설 반영</p>	<p>◦미반영</p> <p>-고달세월교는 자전거도로 순환노선으로 계획된 구간으로 관리주체인 곡성군에서 하천정용을 받았으며, 교량공사가 시행되어 재가설된 구조물로 금회 존치로 계획하였음.</p>	
<p>5. 구 금곡교 존치 요망</p> <p>◦구 금곡교를 이용해 신기리 마을 주민들이 남원 금지구역에 농사를 짓고 있어 농업용 경작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철거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임</p> <p>◦또한, 남원과 곡성을 잇는 섬진강 자전거도로 연결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존치 요망</p>	<p>◦미반영</p> <p>-(구)금곡교 직하류에 위치한 금곡교로 통행이 가능하며, 교량능력검토결과 여유고 및 경간장이 부족하여 치수적으로 불리한 시설물로 금회 철거계획을 수립하였음</p>	

14. 구례군 환경교통과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II. 검토의견 1. 사업의 목적 ◦2009년 기 수립된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이후 유관기관과 지자체에서 실시한 각종 하천개수 사업 및 하천시설물 설치 등 하천 제반 여건의 변화와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하천사용의 이익증진을 위한	-	
2. 검토내용 ◦수생태계와 육상생태계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환경 및 수질보전 계획을 포함한 정비계획	◦반영 -수생태계 육상생태계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환경 및 수질보전 계획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	
◦최대한 하천의 원형을 보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반영 -하천은 최대한 원형으로 보전하고 불가피한 경우 타당성 및 저감방안을 수립	
◦공사 시 발생 할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비산먼지, 부유물질, 소음·진동)에 대한 적절한 저감시설 계획 등	◦반영 -공사 시 발생 할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비산먼지, 부유물질, 소음·진동)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	
III. 종합의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저감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및 본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저감방안 등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반영·작성하여야 함	◦반영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저감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및 본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저감방안 등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반영·작성하였음	
◦환경 친화적이고 자연 정화기능을 갖추어 하천 수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	◦반영 -환경 친화적이고 자연 정화기능을 갖추어 하천 수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	
◦구례읍 신월리 하도정비에 따른 구례군 상수원 채수에 따른 오염대책 수립	◦반영 -구례읍 신원리 하도정비3 공사시 구례군 상수원 지역의 수질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공사 시 환경오염에 대한 적절한 저감시설 설치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오탁방지, 비산먼지, 소음·진동 적정 방지시설 갖추고 공사 시행	◦반영 -공사 시 환경오염에 대한 적절한 저감계획을 수립	

15. 하동군 환경보호과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p>II. 총괄의견</p> <p>◦본 건은 기 수립된 2009년 하천기본계획 이후, 하천 제반 여건의 변화와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하천 관리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계획한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임.</p> <p>◦사업시행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 환경영향 저감대책(민원 방지 및 민원 해결방안 포함)을 강구·시행하여야 함.</p>	<p>◦반영</p> <p>-사업시행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 환경영향 저감대책(민원 방지 및 해결방안 포함)을 강구·시행하도록 하겠음</p>	
<p>III. 세부검토의견</p> <p>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p> <p>◦문헌조사 결과 수달, 삿대 등 법정보호종이 확인된 바, 종 활동이 왕성한 시기, 주요이동경로 및 주서식지 등을 추가 현지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서식지 보전 및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감대책을 수립·제시 하여야 함.</p>	<p>◦반영</p> <p>-문헌자료에서 확인된 법정보호종 및 중요항목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문헌 및 현지조사시 확인된 법정보호종 등에 대한 보전 계획을 저감방안에 제시하였음</p>	
<p>2.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p> <p>◦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조망점에 대하여 경관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수립 제시하여야함.</p> <p>-특히, 보축과 축제, 교량, 보를 계획하고 있는 모든 구간에 대해서는 면밀한 시뮬레이션과 경관영향을 예측하여 수려한 섬진강의 경관보존과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p>	<p>◦반영</p> <p>-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조망점에 대하여 경관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수립</p>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p>3. 수자원의 보존</p> <p>◦본 사업지역은 섬본E 및 섬본F 수질오염총량지역으로 지역개발사업 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는 바, 수질오염총량검토서를 관리청으로 제출하여 오염총량 부하량을 할당받아 환경영향평가 등을 협의하여야 함.</p> <p>◦해당 하천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므로 하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p>◦반영</p> <p>-계획시행으로 인해 점오염원은 없으므로 비점오염원(토지계)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하였으며, 검토결과 배출부하량이 감소되어 지역개발할당 부하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p> <p>-본 계획은 하천기본계획 단계로 개발기본계획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작성 후 시행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수질오염총량검토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할 계획</p> <p>◦반영</p> <p>- 하동군에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 상류구간 인접구간의 개수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음</p>	
<p>4. 환경기준의 부합성</p> <p>◦사업시행 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민원 발생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가적인 적정 저감방안을 마련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p> <p>-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일원 하도정비에 따른 오염 대책 수립 필요</p>	<p>◦반영</p> <p>-본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은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하였으며,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인원 하도 정비계획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p>	
<p>◦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오탁방지,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에 대한 적절한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함.</p>	<p>◦반영</p> <p>-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오탁,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에 대한 적절한 저감계획을 수립하였음</p>	

16. 하동군 해양수산과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1. 지구지정 변경사항							◦미반영 -친수구간 변경사항에 대하여 주변 현황,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연번	위치	측점(No.)		면적(km ²)	지구지정				비고
		종점	시점		기정	변경			
1	하동읍	12+400	13+200	0.042	완충지구	친수거점			야생차엑스포
2	하동읍	16+250	17+150	0.080	일반보전	친수거점			이화만지 야생초화원
3	약양면	25+900	26+400	0.006	완충지구	근린친수	나루터(평사리)		
4	화개면	33+700	34+200	0.006	일반보전	근린친수	화개(줄배)		
2. 저수호안 계획							◦미반영 -해당구간에 대해 검토결과 호안상태 등이 양호하여 금회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음		
지구명	안별	연장(m)	측점(No.)	비고					
고포지구	좌	260	0+750~0+950						
궁항지구	좌	1,100	3+500~4+500						
신월지구	좌	500	8+400~8+700						
화심지구	좌	1,000	16+600~17+500						
흥룡지구	좌	600	20+150~20+750						
3. 보축계획							◦부분반영 -하천설계기준 등에 따라 개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동지구는 독마루폭 부족으로 보축 계획을 수립하였음		
지구명	안별	연장(m)	측점(No.)	비고					
신방지구	좌	1,000	5+900~6+800						
목도지구	좌	250	10+400~10+650						
하동지구	좌	600	14+800~15+200						
4. 하도정비 계획							◦반영 -하천설계기준 등에 따라 개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였음 • 재해위험에 따라 하동군에 하도정비구역을 4개소 선정		
지구명	위치	측점(No.)	면적(km ²)	비고					
신기지구	하동읍 비파리	12+300~12+800	0.136						
5. 유지관리 계획							◦반영 -하천설계기준 등에 따라 개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였음 • 재해위험에 따라 하동군에 하도정비구역을 4개소 선정		
지구명	위치	측점(No.)	면적(km ²)	비고					
유지관리지구2	하동읍 흥룡리	22+200~23+000	0.156						

17. 관련 전문가 의견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1. 동·식물상 조사가 문헌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중요 생물(멸종위기종) 및 서식지(습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가 필요함	<p>◦반영</p> <p>-문헌조사시 사후환경영향영조사 내용 최신 자료 활용, 전국자연환경조사, 동계조류센서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등 총 41개의 문헌조사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으며, 현지조사시 환경영향 지침을 준용하여 추계 및 동계조류 조사 실시하였음</p>	
2. 생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구간을 도출하여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p>◦반영</p> <p>-섬진강이 유하하는 행정구역에 분포하고 있는 생태·자연도 1, 2등급 권역, 백두대간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에 대한 검토 후 하천역과 연계된 자연환경보전 구간을 명기하고 영향예측을 실시하였음</p>	
3. 최신의 다양한 문헌을 추가적으로 참조하여야 함	<p>◦반영</p> <p>-문헌조사시 사후환경영향영조사 내용 최신 자료 활용, 전국자연환경조사, 동계조류센서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등 총 41개의 문헌조사를 참고 하였음</p>	
4. 대상하천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생물의 서식지 및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p>◦반영</p> <p>-문헌 조사 및 현자조사를 통하여 법정보호종의 분포여부를 고려하여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였음</p>	
5. 생태자연도 1등급이 포함되거나 1등급과 인접한 구간에 대하여 세부적인 영향검토와 저감방안이 요구됨	<p>◦반영</p> <p>-계획구간 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불가피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p>	
6. 대상하천에 가치가 높은 습지가 다수 분포하므로, 이에 대한 영향검토를 통하여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p>◦반영</p> <p>-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하도정비 및 유지관리 구역이 필요한 지역을 최소화하여 검토하였음</p>	

나. 주민의견

구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남원시 대강면 발전협의회	<p>◦대강면 발전협의회에서는 남원시 대강면 방동리 1420번지 일원, 금지면 상귀리 588-1번지 일원은(일부 친수지역임) 국토교통부에서 매입전 거주 및 경작을 하며 생활하던 장소로 홍수시 범람이 거의 없었던 지역입니다. 우리 협의회에서 현수된 조경수를 섬진강변 유희부지에 식재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으로 걷고 싶은 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보전지역으로 묶여있어 많은 부분 제약이 있으므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친수기능 향상 더불어 친수지구 지정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검토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아름다운 하천 가꾸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p>◦반영 -남원시 대강면 방동리 일원 및 금지면 상귀리 일원에 대하여 현재 개발현황(묘목장, 유채꽃 축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수지구로 계획하였음</p>	
구례군 구례읍 심중구	<p>◦주민설명회(구례군 구례읍사무소 2019.07.11 오후3시)를 듣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마을지역주민과 임시총회를 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 검토 후 주민의견이 사업시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p> <p>-자료 9.1.3 신월지구 경관 영향 분석자료 토의 결과 주민전원 사업 시행에 반대요구(회의록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섬진강 독마루 높이가 4m로 인하여 지역주민 주택에서 조망경관이 없음 •독마루로 인한 마을경관 훼손 및 하절기 섬진강을 지나오는 자연 바람이 시원하나 섬진강 독마루 높이로 마을 기온상승 예상 •100년이 지나도 침수지역이 아님(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 1건 없음) <p>-자료 9.3.1 환경친화적 이용 다항 신월리 일원 사업시행 찬성(회의록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적토 제거 통수능력 확보 •하도내 악취 발생 및 꼬리하루살이 등의 곤충 서식지 정리 	<p>◦반영 -신월지구는 축제시 하천인접구간 가옥 등 편입이 발생하며 제방 축조에 따른 경관성 저하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금회 홍수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p> <p>◦반영 -신월지구 앞측 구간을 하도정비구간으로 설정하여 퇴적토 제거를 통한 통수능력 확보, 하도내 악취 발생 및 곤충 서식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p>	

구 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구례군 구례읍 이종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섬진강변 대나무숲길연장 조성 -아름다운 숲길 조성이 구례읍 오봉 마을에서 원천 마을까지 조성되어 있지만, 구례읍 신월리까지 강변에 대나무 숲길을 연장 조성하면 좋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반영 -금회 섬진강 하천기본계획에서의 대나무 숲길의 연장은 검토대상 아님 	-
구례군 구례읍 이충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척면 동해마을 침수 -동해마을 앞 지방도 도로가 낮아서 1년에 3~4회씩 도로가 침수되어 주민들의 통행이 불가 -동해마을 앞 지방도가 침수되지 않도록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기를 건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동해마을 앞 지방도 구간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도로송상 계획을 수립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산면 광평리 수중보 정비 요청 -하천에 설치된 수중보로 인해 보 근처 퇴적물이 쌓여 썩어 악취가 심한 상황이므로 준설과 더불어 강물이 흐를수 있도록 보를 가동보로 교체 해주길 건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반영 -마산면 광평리에 위치한 사도낙차공은 하상경사를 완화시켜 하상을 유지하고 하천 종단 및 횡단형상을 유지시키기 위한 구조물로 하천설계기준 및 하천현황을 고려하여 미반영하였음 -낙차공 인근 퇴적물 제거 등은 하천유지관리 사업을 통하여 시행될 사항으로 향후 해당지구를 검토하겠음 	
순천시 황전면 황우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전면 각 마을의 오·폐수가 소하천을 통해 섬진강으로 유입되고 있어 섬진강의 수질오염과 환경에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오·폐수 중앙처리 시설의 관로 신설이 급선무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예산지원과 집행이 매우 절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오·폐수의 유입으로 섬진강의 수질오염의 영향이 가중됨에 따라 오·폐수 처리 시설의 계획을 수립되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도록 하겠음 	
순천시 황전면 권영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례구역 인근 퇴적물로 인해 섬진강 유수 흐름 재해로 정체되어 벌레 및 악취가 발생되어 섬진강변 퇴적물 준설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구례구역 인근 퇴적구간에 대해 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였음 	

구 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순창군 적성면 정용호	◦적성보축1지구 지방하천(수홍천) 약 200m 국도24와 연결공사 부탁드립니다.	◦미반영 -지방하천인 수홍천은 하천관리청인 전라북도(순창군)에서 관리할 사항임	-
순창군 유등면 이경주	◦하천독을 높일 것이 아니라 하천 정리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오교 유촌양수장 및 보를 갖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미반영 -하천의 치수 및 생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취수보는 해당지자체(농어촌공사)가 관리할 사항임	-
순창군 순창읍 황정만	◦화탄세월교~유촌대교 구간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반대편 무제부 구간으로 하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요망 ◦화탄 잠수교를 통하여 여러개의 마을이 통행하는데 상시 침수구역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하천기본계획에 재가설로 수립요망	◦미반영 -대안측에 기존 자전거 종주노선이 설치되어 사용중이며, 해당구간은 산지 무제부 구간으로 자전거도로 설치는 불가한 사항임 ◦미반영 -약 1km 상류의 유적교로 통행가능하며, 능력검토결과 여유고 및 경간장 부족으로 금회 철거계획을 수립하였음	-
순창군 순창읍 김성민	◦하천의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이 국토의 보호와 주민생활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면 현재 무제부 구간의 통행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의 계획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성면 석산리, 동계면 어치리 지내 구간	◦미반영 -도로 등의 선형공작물이 제방역할을 하는 구간에 대하여 도로손상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해당 구간의 경우 산지 무제부 구간으로 현재 치수안전도가 확보된 구간으로 별도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	-

구 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순창군 적성면 권영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섬진강 고원 보축1지구, 보축2지구, 3지구 퇴적층을(강바닥) 걷어내는게 급선무 ◦무수보, 화탄보 높이가 너무 높아 보를 철거하든지 가동보로 개축(물흐름을 막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반영 -하도정비구간은 섬진강의 자연환경을 최대한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계획하였음 ◦미반영 -무수보 및 화탄보는 양수장의 취수위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로 철거가 불가하며,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및 순창군과의 협의를 통해 철거 및 재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임 	
순창군 문화관광과 강남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섬진강 순창군 구역내 관리지구 지정시 향후 친수 목적의 하천관리 필요 ◦지역주민, 관광객, 지자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친수거점구역 확대 필요 ◦하천구역내 지대가 높고 홍수위, 홍수피해 없는 구간 “친수거점구역”확대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현재 침수빈도, 이용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수지구를 계획하였음 	
순창군 건설과 구규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No.103+440(좌안) 축제계획 구간 화탄소하천 배수문 설치구간 만수위시 하천수 역수로 게이트 펌프 설치하여 강제배제를 하천기본계획에 포함 요망(배수문만 설치시 제내지 배수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반영 -본 과업은 국가하천인 섬진강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으로 소하천에 대한 재해경감 대책(게이트 펌프)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의 종합계획 수립시 검토 및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순창군 풍산면 강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월교(No.109+600)~No.113+600 구간 우안쪽에 3개 마을이 있는데 홍수시 통행이 불가능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반영 -해당 구간은 대안측에 있는 국도21호선 및 우회로를 통해 진입 가능함 	